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편집자 주-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분사(分社) 등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의약품 제조 및 수입관리업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26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사(分社) 등에 의해 신규 의약품 등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시설조사 및 KGMP 평가를 면제하고 품목허가 절차만을 거치게 함으로써 현행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아울러 개별품목에 대한 양도·양수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종전 타회사로 일정 품목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신규회사의 명의로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함.
- 의약품 등 수입자확인제도와 의약품제조업소의 영업소 등록절차를 폐지하여 약사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요건과 인적요건(수입관리자)만 충족하면 별도의 사전 확인절차없이 의약품 수입 및 영업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광고관리사항을 분리하여 종전 의약품수준에서 관리를 받아오던 화장품에 대한 광고관리가 화장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

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현재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 약사신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공고를 하고 실시하도록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기타 이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개혁관련 사항으로는 제조업소의 생산실적보고 주기를 반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고, 도매협회에서 발급하던 의약품배달증표 소지의무를 폐지하였으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시 정기보고를 삭제하였고, 약업사의 타시도 이전을 허용함.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한 추진대책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으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약분업 실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6월중에 출범하게 될 의약분업실행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약관련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및 언론계, 학계 등 공익대표와 관련공무원 등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시민단체 주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기초로 의약분업 실시준비계획에 대한 협의 등을 거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의약분업 실시준비 사항에 대한 정부 및 각 관련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의약분업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오랜 의료이용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개혁적인 조치임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적극 추진

- 의약분업을 적용하기 곤란한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품명을 약국에 사전 통지하여 준비토록 하는 등 의약분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지역별로 의사·약사단체와 의료보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함.
- 약국에서 처방·조제할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배송센터를 지정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산, FAX 등으로 연락망을 구축하여 처방전이 환자보다 먼저 약국에 전달됨으로써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 의약분업 홍보 강화

-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절차 변경내용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이를 위해 홍보 대상 및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TV 등 대중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 의·약계의 참여 유도

-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의사·약사가 직업적 긍지를 갖고 환자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처방료·조제료 등)를 현실화함.
- 약국의 조제·투약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우수약국 관리기준(GPP)의 실시를 촉진하고, 약국의 업무 전산화, 시설 확충 등 의약분업 준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예산에 400억원(개소당 5000만원, 800개소)을 반영하였음.

□ 관련 보건의료 개혁 정책의 병행 추진

- 의약품 유통개혁
  -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체계를 현대화하고 의약품 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약가 마진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납품비리를 제거하며, 의·약계의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토록 하여 의료기관의 기능을 전문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별로 그 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의료보험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함.
- 병원으로의 외래환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벼운 질환에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 의료이용의 왜곡현상을 방지해 나갈 계획임.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규제정비 계획에 의한 지역보건법 개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2호)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의 보건교육 실시후 결과제출 의무 폐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사업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보건의료원 설치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절차정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시·군·구,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시기를 각각 6월말, 12월말로 조정
- 지역주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한 자의 결과제출 의무 폐지
-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경우의 보건소장의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완화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 보건의료원 설치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4대 지원사업 실시

종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준을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행하여져 온 것이 통상적인 형태였으나 금년에 정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그러한 지원형태를 크게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별지원사업은 작년에 재활과정운영지원사업에 한하여 시행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4개 분야, 총 7억 9천여 만원(국고 및 지방비 합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된다.

□ 4대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내용

–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 생활시설내 직원 및 전문가의 주도로 시설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 교육재활서비스 및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단위 프로그램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하여 장애를 극복토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예시: 등산을 통한 정신지체인의 심장 및 근력강화 프로그램, 정신지체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전 준비 가정생활프로그램 등)

– 동아리활동지원사업

• 생활시설내 장애인이 직접 자치활동 및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각자의 소질을 개발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탈시설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예시: 뇌성마비장애인의 연극동아리 프로그램, 척수장애인의 휠체어농구단 운영 프로그램 등)

– 중증장애인보호지원사업

• 생활시설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시설이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의 수술 또는 특수보장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고통 및 장애고착을 해소·예방하고자 함(예시: 뇌성마비장애인 신체기형 교정수술 및 전동휠체어 제공, 시력상실자에 대한 각막이식수술 등)

– 모범 보호작업장 모델화사업

• 특색있는 직업재활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타보호작업장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거나 특정 장애종별 또는 장애인직업재활과정

에의 전문성을 축적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 (예시: 보호작업장에서 선택·발전시킬 수 있는 적합직종운영사업, 사양품목을 생산하더라도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

□ 특별지원사업의 선정과정

– 특별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1999년 5월부터 각 시설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 11일(금)에 심사회를 개최함. 심사회에서 각 시설 실무책임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 사업의 필요성, 사업진행과정(역할분담, 재원확보, 사후평가 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사회복지학전공 교수 또는 재활의학전공의 등)과 질의응답,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조정 등을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34개소, 동아리활동지원사업 14개소, 중증장애인보호지원사업 49명, 모범보호작업장모델화사업 16개소가 선정됨.

□ 기대효과

– 장애인생활시설이 단순히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역량을 강화함.

– 시설간, 시·도간 경쟁을 통하여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력하는 시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별 지원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예정임.